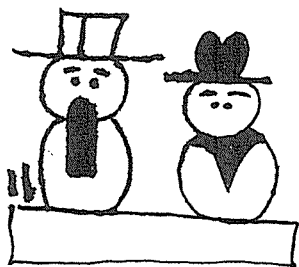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이 시 백

어느 가정, 어느 국가에서나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은 다른 어떤일 보다 오래 앞장서기 마련이다. 그렇다고해서 무턱대고 모두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잘 사는 것 같아 펍 자랑스럽다. 금년의 국민 1인당 년평균 소득이 미화 4,000불을 넘어섰다니 정말 놀랍다.

2층 양옥집에, 자가용을 타며 살기를 일생의 꿈으로 생각하던 때가 언제인데 이렇게 빨리 현실로 나타나다니, 찌들게 가난했

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는 짜릿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지난 30여년동안 그야말로 일벌레 같이 끔찍이도 노력해온 우리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눈을 돌려 바라 보건데 하루 세 끼 해결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달동네 가족과, 부모없는 가정을 지키는 외롭고 가난한 소년 소녀가장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해 알뜰히 저축하면서도 속칭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장난에 나날이 훅훅 뛰는 집값에 절망하는 무주택 가정이 셋 중의 하나 꼴이니, 집과 자가용이 있는 나는 잘 산다고 할 수 있어도 아직은 우리 모두가 잘 산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아무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 원천적으로 가난을 없애 버리자는 논리는 정도 문제일 뿐이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은 다르다.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은 다같이 건강할 수 있으며, 또 건강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못 사



잘살든, 못살든 모든 사람은 다같이 건강할 수 있으며 건강해야 한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할 이유가 다소 더 있다 손 치더라도 이를 숙명적으로 받아드릴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과 부(富)를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다시말하여 누구나 부자는 될 수 없어도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이렇듯 건강이 인간의 권리라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 건강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의무대상은 나 자신이고, 둘째 의무 대상은 정부이다. 이들은 다같이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의무를 다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 내 건강 관리 주장에 대한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내 건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몇 가지 건강 생활지침이라도 꼭 지키도록 해야하며 우리가족 우리사회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이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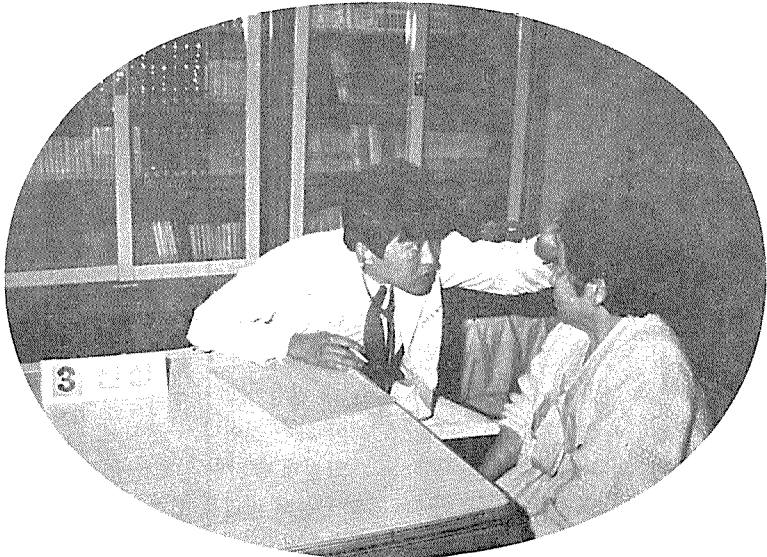
그렇게 즐기던 담배를 어느날 갑자기 단칼에 끊어 버리듯 땀겨쳐버리는 결심, 술을 과음하지 않는 절제생활, 올바른 건강지식의 습득과 건강한 태도, 그리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등은 전부 자기건강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노력이다. 생각하면 어디 나 만을 위한 건강인가? 내가 건강함으로써 우리 가정 모두가 건강할 수 있다면 진정 우리가정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정을 위하여 내가 지켜야 할 건강생활의 지침이나, 내 건강 관리는 분명히 나의 즐거움이며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가 될 것이다.

잘 살든 못 살든 내 건강을 위한 권리 주장에 이만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확실히 잘 사는

부는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건강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은 첫째는 나 자신이고 둘째는 정부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강증진책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건강사업은 정부의 의무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풀이된다 하겠다.

둘째 건강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정부의 의무는 무엇인가? 정

강증진책에 대해서는 부단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도 간접적인 표현으로서 명시되어 있거니와 앞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건강사업은 정



국민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에는 정부의 의무이행 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건강에 대한 나 자신의 능동적인 요구와 건강생활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한다.

부의 의무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잘 사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도시사람보다 오벽지 또는 농어촌 사람을 위한 정부의 의무적인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의료자원의 지리적 균등분포, 생활환경의 정화를 위한 공해관리, 국민의료 서비스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발, 그리고 평소 개인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 등은 정부의 의무적인 노력의 대표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애써온 이같은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불만족스럽게 보는 이도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에 큰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4차 5개년경제개발부터 보건사업을 사회개발 부문속에 포함시켜 정부의 투자규모를 늘리고 조직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복지사회국가를 향한 의무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깨달아야 할 점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에는 정부의 의무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자원의 개발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강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신의 의무가 필연코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나 자신의 능동적인 요구와 건강생활의 실천없이 정부의 의무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난과 부(富)의 경제적 차별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건강은 차별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각 개인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노력으로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우리의 보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대를 향한 건강입국(健康立國)의 기치를 높이 세워야 한다.

(필자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교수)